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노재철*, 고준기**
호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Jae-Chul Noh(noh-jc@hanmail.net)*, Zoon-ki Ko(kozk@naver.com)**

요약

우리나라도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첫째,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통합성·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계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체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중심어 : |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 영업비밀 | 분쟁해결 | 기술분쟁 | 심판 조정 및 중재 |

Abstract

South Korea needs reorganiza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due to the frequent occurrence of a case that trade secret or technique are leaked. First, the distributed various laws are established and enforced by enacting and enforcing individual laws. Therefore, the redundancy problems, the collision of individual laws, the decline in diversity, integrity, and connectivity are issues. An independent legal system is needed by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Thereby, The support system of technological protection that is sprayed in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Patent Office,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Trade Committee,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Spy Agency integrates and unifies institutionally, and it is necessary to advance a policy with functional division.

Second, the Patent Tribunal,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by the patent law, the Industrial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and the Medium and Small Firm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 on Small Business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Law are installed. However, since it established the integrated law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it is desirable to set the merged operation of establishment on the Technic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o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keyword : | Act on the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 Trade Secret | Dispute Resolution | Technical Dispute | Mediation and Arbitration |

I. 서론

우리나라도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도 핵심기술의 보유여부가 기업 성공의 전제가 되고 있어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타사의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게 되었다.

그동안 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하면서 목적·대상·기능·수단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개별법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청이 분산되면서, 심판과 조정·중재업무 역시 분산되면서 분쟁조정 실적도 미약하고, 심판·조정·중재의 기능 자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면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렇게 기술유출분쟁 심판위원회와 조정·중재업무의 분리, 각종 조정위원회의 다원화로 인한 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분쟁해결의 전문성·중립성·신속성의 약화로 인한 효율성이 낮아 분쟁해결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법의 법률체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입법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시 분쟁해결 실태

1.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 내·외부적 조치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외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64.8%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조치방안으로 '보안강화 관련 조치시행'(30.8%), '관계자에 손해배상청구'(19.8%), '관계자 고소·고발'(17.0%), '수사기관에 수사의뢰'(13.2%),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1]. 한편 35.2%는 기술유출이 발생한 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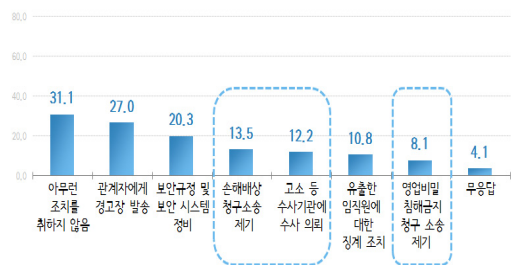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효성이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다'가 44.4%,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가 22.2%나 된다[2].

기술유출 후 중소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취한 기술보안강화 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원교육강화(28.0%), 보안관리강화(25.8%), 보안장비 설치 강화(9.9%), 자료접근권 관리(2.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부적으로 취한 조치가 '효과가 없었다'는 기업도 19.2%로 나타나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기업도 7.7%로 조사되었다[1].

2.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치 방법 중에서는 '관계자에게 경고장을 발송'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보안규정 및 보안 시스템의 정비를 시행했다'는 응답이 20.3%로 높았다. 영업비밀이 유출된 기업 중 33.8%는 법적인 대응('고소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12.2%)+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13.5%)+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 소송 제기'(8.1%))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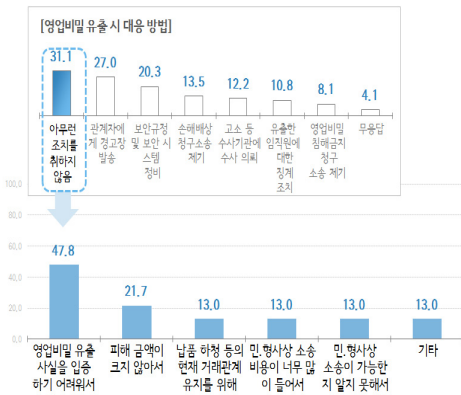
[base : 영업비밀 유출 기업체 N=75, 단위: %, 중복응답]

그림 1.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3]

3.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이유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 이유는 '유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47.8%)이다. 그 외 응답으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21.7%)가 상대적으로 높았다[3].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외부유출을 우려해 특허도 없이 내부 기밀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내부 기밀로 다루는 기술 분야는 피해를 본 회사 측이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기술유출로 인정받기 어렵다. 영업비밀을 보장받으려면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성, 관리 여부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기업이 기술을 만드는 데만 힘을 기울여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물리적으로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회사 내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판단해 인정받지 못하면 영업비밀 유출로 인정받기 어렵다.



[base :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체 N=23,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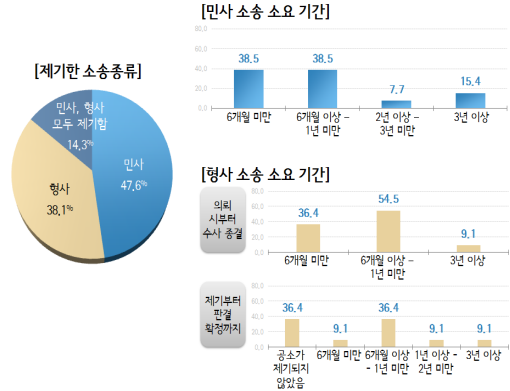
그림 2.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3]

4. 영업비밀 유출 시 소송 관련

1) 영업비밀 유출 시 취한 소송 종류 및 처리기간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 대응을 한 기업 중 47.6%는 ‘민사’, 38.1%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둘 다 제기한 경험이 있다는 기업은 14.3%로 높지 않다. 민사 소송한 기업의 경우 77%가 소송 제기 시점부터 판결 확정까지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미만’(38.5%), ‘6개월 이상~1년 미만’(38.5%)) 형사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경우 수사 의뢰에서 종결까지 ‘6개월 이상~1년 미만’(54.5%),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 확정까지

‘6개월 이상~1년 미만’(36.4%)이 소요되었다는 응답이 높았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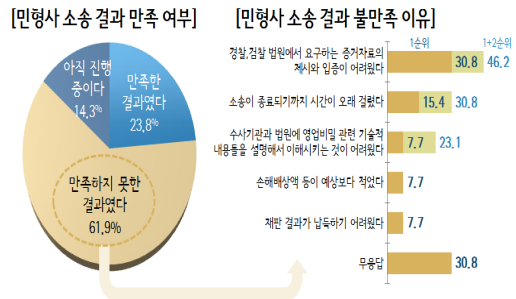


[base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 대응을 한 기업체 N=21, 단위: %]

그림 3. 영업비밀 유출 시 취한 소송 종류 및 처리기간[3]

2) 영업비밀 유출시 민·형사 소송 결과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영업비밀이 유출되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61.9%는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제시와 입증이 어려웠다’가 30.8%로 가장 높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소송 종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15.4%의 2순위로 꼽혔다[3].



[base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 대응을 한 기업체 N=21, 단위: %]

그림 4. 영업비밀 유출시 민형사 소송 결과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3]

5. 대·중소기업 간 소송·분쟁실태

기술유출 분쟁의 해결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경우 분쟁당사자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기술탈취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타 계약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막대한 매출손실과 경영애로를 초래한다. 각종 특허소송의 통계에서 보는 바처럼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매우 낮은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은 분쟁대응능력이 낮은 것도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감정 등의 소요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소송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둘째, 추후 다른 대기업과의 거래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특허분쟁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대·소기업간 특허소송신청건수에서도 드러난다. 대중소기업간 특허분쟁 관련 소송은 2007년 70건에 비해 2010년 32건으로 2배이상 감소하였다. 매년 특허등록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중소기업간 특허소송청구 건수 감소는 중소기업의 소송기피를 반영하고 있다.

70건('07)→63건('08)→49건('09)→32건('10)→14건('11)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특허에 대한 증거의 확보와 입증의 책임 등이 모두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송과정에서 야기되는 재정적·시간적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

특허 심판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분쟁 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50.9%('07)→55.5%('08)→45.25%('09)→47.4%('10)→42.2%('11)[4]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및 본안 특허침해소송에서 89% 패소했고 이중 특허침해 본안소송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5]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 승소율은 전체 평균 승소율을 웃돌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없다. 이는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자금력이 열악해 대기업을 상대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6].

III. 기술보호관련 분쟁해결 법·정책 검토

1. 정부의 산업기술 관련 분쟁 지원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3~‘15년)’을 수립·시행해 국가 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 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중소기업청은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16~‘18)”을 통하여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②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③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

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 법률 체계와 기술보호 시스템

그동안 199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8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4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인력유출, 분쟁해결, 손해보호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대해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과 현실과의 괴리가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체도가 각 부처·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종 개별 법률도 목적별·기능별·대상별로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없지 않아 산재된 규정과 제도를 상호연계 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중소기업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신고의 접수, ②보안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기술보호 진단, ③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자문, ④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⑤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동법 제12조).

또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전담기관,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법 제15조에서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동법 제16조에서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동법 제17조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교육, 동법 제18조에서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동법 제19조에서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보호 통합서비스)”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수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취약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전문가 사전진단 및 자문 무료 지원(3일간), 보안문제 발견시 최대 7일까지 추가 컨설팅 지원(비용 75%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 핵심기술 정보 보관 및 기술유출 발생시 보유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제도 · 온/오프라인(www.kescrow.or.kr)으로 상시 신청 가능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률 및 기술보호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	·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서비스 ·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 탐지 등 서비스 무상 제공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보안과 출입통제 설비구축 등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며, 기술 보호를 위한 진단에서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안진단, 법률상담, 신고·수사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이 있다. 이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 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 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유출 분쟁 시 재판 진행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도 있다.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게는 임치수수료가 지원돼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와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인 보안과 출입통제설비 구축 등 물리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도 있다. 신청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4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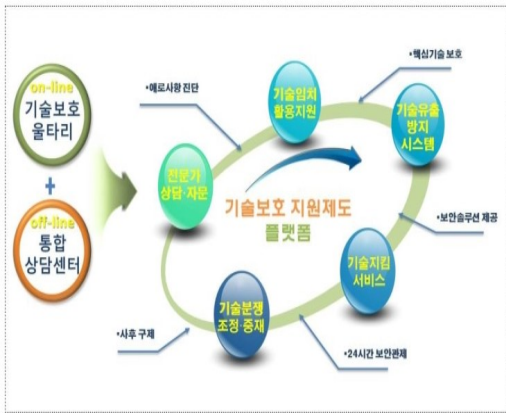


그림 5. 기술보호 지원제도 플랫폼[7]

기술보호 기관으로 기술보호 통합상담 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을 통해 연중 상시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7].

IV. 분쟁해결 시스템의 문제점

1. 상담창구분산과 총괄 관리 대표부처의 부재 등

각 부처·청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201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보호협회), 특허청(영업비밀보호센터) 등

부처·청별로 운영되어 기업에 필요한 기술보호 사업을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담창구를 동 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술보호 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게 되었다.

동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전담기관으로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였다.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분쟁 시법원의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유출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고자 설치되었다. 기술유출의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조정·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 설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지원영역을 ‘기술유출 사전 예방’에서 ‘기술유출 사후구제’까지 넓히게 되었다. 특히 기술보호센터 설치로 중소기업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보호지원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통합창구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는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부처별 기술보호지원제도는 다르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지원제도별 정부 관리부처가 모두 다르고 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 분산된 심판, 조정·중재위원회의 문제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기술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집단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관한 분쟁해결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약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2014년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분쟁조정 및 중재에 대한 운영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법은 조정뿐만 아니라 중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위의 각 위원회는 각자 별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종 위원회의 소속도 특허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허심판원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심판과 재심을 위한 기관이지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기관이며, 또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관이다. 법원의 소송에 따른 법리적 판단과 달리 심판위원회나 각 부처·청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문성·공정성·신속성·저비용에 관한 주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처·청의 기능별 개별법에 따른 분산되면서 처리 분쟁조정 실적도 미약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3.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각종 특허소송의 통계에서 보는 바처럼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매우 낮은 것은 그만큼 중소기업은 분쟁대응 능력이 낮은 것도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및 감정 등의 소요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 소송과정에서 기술유출문제

영업비밀은 소송과정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내용이 알려져 산업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보유자는 소송절차에서 2차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소송을 통해 영업비밀이 침해당한다고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5. 위원회 위원 전문성문제

[사례]

〈사례1〉 「A기업은 B기업에서 퇴직한 엔지니어들이 세운 소프트웨어 회사다. B기업은 A기업과 퇴직 엔지니어들이 B기업의 영업비밀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해서 제품을 개발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했다. 수사과정에서 A기업이 B기업의 소스코드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한 것인지 쟁점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외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일부 소스코드가 유사하다는 회신을 받고 A기업을 기소한다.」

〈사례2〉 「A기업과 B기업은 서로 갖고 있는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개발이 완료될 무렵 두 기업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공동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A기업과 B기업이 모두 솔루션을 출시했다. 두 기업은 모두 상대방이 자기 회사의 기술 자료를 활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연구자 자체작성자료

위의 기술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대방 회사가 사용했느냐는 점이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기술의 경우 소스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해도 권리침해를 속단할 수 없다. 많은 기업에서 오픈소스(Open Source)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므로 오픈소스를 제외하고 감정을 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청, 또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소프트웨어 유사도 감정을 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에게 정확한 개발 과정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부정확한 감정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기술 감정을 의뢰할만한 곳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V.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선방안

1. 상담창구 일원화와 총괄 관리 대표부처의 지정 및 통합법 제정

2015년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2015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아울러 정부부처별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부처·청의 지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처로 하여금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정부 대표 부처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

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주체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초 접점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활성화, 기업환경에 적합한 기술보호지원제도의 안내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위한 기술보호 인식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기술유출 보호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부처의 지정, 그리고 상담창구 통합화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유출 보호지원에 관한 법규들은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법제도적으로 대응해오면서 목적·대상·기능별에 따른 개별 법률을 제정·시행하다보니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다. 단순히 기술유출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법률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 보호와 지원, 후자는 산업기술의 부정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은 기술유출 방지 목적만을 위한 법률은 아니다. 법률이 이렇게 개별법 중심으로 분산되다보니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통합성·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제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 통합화·일원화하되, 기능적 분담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지원제도별 정부 관리부처가 모두 다르고 제도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책임주체가 있어야 하고, 상담·지원·분쟁처리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유출 보호지원에 관한 법규들은 통합법으로 제정하여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분산된 심판, 조정·중재위원회를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설치 운영

따라서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을 ‘기술유출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분산된 각종 위원회를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합설치 운영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특허청의 심판위원회와 달리 각종 조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심판과 조정기능을 축으로 하는 통합을 통한 기구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심판위원회와 각종 조정위원회로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낮다. 그렇기 때문에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구로 설치(가칭 ‘산업기술위원회’ 또는 ‘산업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등)하고, 사무국을 두고,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심판위원회, 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다. 기구 확대를 통하여 보다 전문성·공정성을 보다 제고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을 서울 등 수도권과 대전 등 지방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는 법률을 ‘기술유출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고 그 책임주체를 현재 기술유출 분쟁 사례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산하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유사입법례로서 노동위원회법과 같은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3.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송·분쟁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마련

현재 특허청은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사업을 통해 분쟁대응능력이 부족한 약자계층에게 산업재산권 심판·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단지 조정·중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분쟁 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 지원(침해관련 민사소송비용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변호·변리사 제도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 2(취약계층의 지원 등)와 같은 유사입법례와 같이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공익) 변리사로 하여금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또한 분쟁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지원에 편성된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편이어서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5. 소송과정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규정 마련

우리나라도 소송에서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224조의3,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민사소송법이 아닌 관련법에서는 직접적인 비밀심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비공개재판절차의 마련이나, 소송기록 열람에 대한 규제 등이 요구된다.

6. 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기술 감정은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법조인들이 기술 감정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의 감정절차도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기술 분쟁이 급증할 것이므로 사법제도 차원에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8].

각종 위원회에서의 산업기술유출관련 심판,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는 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망된다. 각 소속의 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

고 있다. 전문성 있는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보험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보험이란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가 비용의 일부(보험료의 일정액 등)를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이 평상시 또는 기술개발단계에서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기술유출피해 발생 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기술유출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복구조치의 일환으로 기술유출방지보험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종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제기되어 왔었다[9].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소송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부터 영업손실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유형은 지식재산권 방어보험, 지식재산권 종합보험이 있다. 지식재산권 방어보험은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때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는 보험이고, 지식재산권 종합보험은 지식재산 소송 등에 따른 영업손실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10].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분쟁발생 시 심판 및 소송비용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심판·소송비용지원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제 소송비용과 정부 지원비용간의 현실적 차이와 지원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2010년에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제도’를 신규 도입하여[11], 기술유출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소송비용만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손해보험만을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기술유출 관련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유출 피해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에서부터 피해까지 일정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12].

선행연구에 따르면[13] 기술보험의 목적물은 좁게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용을 지원 받은 국가핵심기술에서부터 넓게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까지 포함될 수 있다.

기술유출보험의 대상상품은 민간보험사와 연계하여 상품은 개발하는 방안과 정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장형성이 되도록 초기에는 정부가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을 선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유출보험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가입자 부담보험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보험사업자 운영·관리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지원한도로 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제도와 유사한 보험제도는 국내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한 입법례를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풍수해보험법」, 「무역보험법」 등이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독자적인 ‘중소기업기술유출방지보험법(가칭)’을 제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독자적인 법률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 통상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보험방식이라 할 수 있다 [14].

VI. 결론

첫째, 기술유출에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시행하다보니 다양한 법률이 분산되어 제정·시행되어 중복성의 문제, 개별 법률 간의 충돌, 포괄성·통합성·연계성 저하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체제로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제도적으로는 통합화·일원화하되, 기능적으로 분담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허법상의 ‘특허심판원’,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술유출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통합법을 제정하면서 중소기업청,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기술분쟁심판조정위원회’(가칭)로 통폐합 설치 운영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와 총괄 관리 대표부처의 지정이 필요하다. 정부부처·청별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총괄 관리하는 대표부처의 지정을 통하여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술유출 피해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에서부터 피해까지 일정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보험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중소기업,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송·분쟁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경제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익변호사·공익변리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각종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김동완(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현황과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1), p.14, 2013.10.15.
- [2]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지식재산유출 피해 실태와 정책과제*, 2013.12.6.
- [3] 특허청,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3(11).
- [4] 강창일(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 인력탈취 이대로는 안된다-중소기업 기술 인력 탈취 실태 및 개선방안*,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pp.17-19.

- 2011(9).
- [5] 이헌재(국회의원), 특허청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 2015.9.15.
 - [6] 중소기업신문, “특허소송도 ‘유전무죄’...” 자금력 달리는 중소기업, 대기업에게 전패”, 2015.09.15.
 - [7] 기술보호 통합포털 울타리(www.ultari.go.kr) 참조.
 - [8] 구태연, 기술감정, 법률신문, 2013.6.3.
 - [9] 손승우, 핵심기술 보유기업의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대처방안 연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205, 2011
 - [10] 보협연구원, 중소기업 기술유출피해보험제도 도입 타당성 연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p.34, 2011(9).
 - [11] 송운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도입 3년 평가와 과제, 보협연구원, p.12, 2013.
 - [12] 국신욱,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법제연구,” 산업재산권 통권 제46호, pp.233-234, 2015.
 - [13] 중소기업청(이규호:과제 책임자), 수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p.182, 2011(12).
 - [14]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분석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보고서, 2016.

저 자 소 개

노 재 철(Jae-Chul Noh)

정회원



- 1989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2010년 2월 : 동아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보장법, 노동법, 정당관계법

고 준 기(Zoon-Ki Ko)

정회원



- 198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1991년 2월 : 한양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 1988년 : 군산대학교 법학과교수 역임

▪ 2015년 12월 : 예원예술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경제통상관계법, 사회보장법, 노동법